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수 있어야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는 3. 동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나 관내 의료기관에는 아리나민 정맥주사를 투여하여 후각 상실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동 검사에 대체하여 다른 검사를 실시하여 후각상실여부를 판단하여 장애보상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대체 검사를 실시하여도 된다면 현재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T and T후각검사를 인정하여도 되는지요?

A 1. 후각상실 유무에 대해서는 의사의 아리나민 정맥주사(아리나민 F를 제외)에 의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후각장애 판정은 방사선 검사 및 병력, 후각상실여부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아리나민 정맥주사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결과들과 T and T후각검사를 종합하여 후각상실에 대한 장애보상을 하여도 될 것임.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Q 가. 소음성난청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조치(배치전환 등) 실시 후 노동부로부터 사후조치 실시로 인정받은 사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보상 신청에 대해 접수불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떠한지요?

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의 부서전환배치 인정사항에 대해 불인정이 가능할 경우 배치전환이 가능한 비소음부서의 기준소음(dB)은 몇 이하여야 하는지 또한 기준 소음에 대한 법령, 내부기준 등 근거는 무엇인지요?

A 근로자가 장애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지사에서 접수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정

구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므로 접수불가 판정이라는 처분은 없으며, 귀사 소속 근로자가 장애보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장애보상청구서 서식에 사업주 확인과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우리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장애상태에 대하여 조사후 처리결과를 회신할 것임.

Q 1. 우리지사관내 W병원에서 요양종결한 재해자로부터 T and T후각검사를 실시한 후 후각상실에 대한 장애보상청구서가 제출되었으나, 2. 산재보험법에 의한 후각 상실에 대한 장애판정기준은 "후각상실 유무에 대해서는 의사의 아리나민 정맥주사에 의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확인 할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저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A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결정까지 받았습니. 그런데 위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A와 그의 남편 B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 이런 경우 A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A의 남편 B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

A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또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30786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A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공동점유자인 남편 B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있는 내만의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죠. 여섯 번째 덕목은 '美消食養胃氣' 즉 적게 먹어 위기를 키우라는 것이다. 음식유절이라는 말이있다.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절제있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 음식을 흡수함에 있어 섭취량을 적게하고 둘째, 음식을 흡수함에 있어서 규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식은 내장과 위를 보호하고 다식은 비장과 위에 손상을 준다. 동고격연에 의하면 다식하는 사람들은 5가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대변이 많고 둘째는 소변이 많고, 셋째는 잠자리가 불안하고, 넷째는 몸이 무겁고, 다섯째는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하였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는 것은 영양부족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음식은 항상 배가 부르기 전까지만 먹는 것이 좋다. 특히 노인들은 하루에 세끼 먹을 것을 여러차례 나누어 5~6번 식사하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 계속) *의정부 수 한방병원 (031-820-7200) www.jhrberg.co.kr

건강한 사람들의 가지 습관 ④

침을 입안에 가득 채워 천천히 삼키라 고 했는데 침은 소화를 도와 위를 보호할 뿐 아니라 혈관의 노화를 막고 살갗에 윤기가 나면서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여러번 씹어서 넘기는 것이 건강에 좋다. 평소엔 침을 뱉어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침을 삼키도록 습관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번째 덕목은 '美消食養胃氣', 즉 화를 잘라서 간기를 키우라는 것이다. 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울화가 터진다는가, 심화가 도졌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을 의

미한다. 기운이 넘치는 것이 아니면서 마음과 몸이 불끈 달아오르는 상태라고 보겠다. [동의보감에서는 화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크게 성을 내면 간정에 화가 생기고 술에 취하면 위에 화가 생긴다. 방사가 지나치면 성기에 화가 생기고, 슬퍼하면 폐에 화가 생긴다. 마음이 곧 입이나 스스로 불사르며 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가 병이 되면 그 해독이 막심하고, 병의 진행속도가 지극히 빠르고 병세가 아주 무뎠하여 죽을 또한 갑자기 닥친다. 화는 원기를 망치게 하는 원흉이다." 사실 살다보면 화를 안낼 수가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답답하고 어울할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2006년에 달라지는 여성과 관련된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내년부터는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80% 수준' 가량의 자녀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 전담교사 지원수준도 현 2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의무설치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인 것에서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지원, 양육모 그룹홈이 확대되며 부자시설 및 부자 그룹홈이 신설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시설 입소기간은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전국의 13곳에 여성 폭력 방지 의료지원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통한 산전, 산후 휴가 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이 현재에 비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0일 40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유산, 사산에 대한 보호휴가도 도입됨에 따라서 16주 이상의 유·사산한 여성에 대해서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신 16~21주는 30일, 임신 22~27주는 60일, 임신 28주 이상은 90일 등으로 규정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과 과장 **김대성**



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실인증 :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함이다. 그 사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6. 정동장애 : 불안, 조증, 우울증, 심한 감정의 굴곡, 무감동 등이 있습니다. 7. 환각 : 환청, 환시, 환촉과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8. 망상 : 피해망상이 발생합니다. "도둑이 내 돈 훔쳐갔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 등 9. 행동장애 : 타인에게 공격적 행동이나 자해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포천병원 (031-539-9114)

치매의 증상

1. 기억력장애 : 처음에는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수록 오래된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져서 더욱 진행되면 식구, 친척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생년월일, 주소, 과거직업, 자신의 이름까지도 모르게 됩니다. 2. 지남력장애 :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상실되었다가 점차 장소, 사람에 대한 개념까지 감소됩니다. 3. 시·공간장애 :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4. 언어장애 : 초기에는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진행되면 원래 뜻과 다른 단어를 사용하며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기 단계에서는 말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거래처 갑에게 2002년 7월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하였으나 2002년 11월 거래처 갑의 파산결정으로 본인은 극심한 자금난으로 2003년 4월 폐업하였다가, 2005년 2월에 재개업 하였습니다. 거래처 갑에 대한 폐업한 사업장의 대손금의 손실시효 완성일(3년)이 2005년 11월로 도래됨에 따라 동 회수불능 매출채권을 2005년 2월에 재개업한 사업장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자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내용과 같이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당해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조업에서 부동산내대입으로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재개업한 사업장 또는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가 없어 판단됩니다. 다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파산 선고일을 재확인하시어 2003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로 회수불능매출채권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謹賀新年

대일비닐총판

이전 개업

HD, PE, PP 원단생산
쇼핑백·비닐인쇄기공
각종 공업용 포장자재 전문



취급 품목
비닐, 락카, 이형제, 실리콘, 면장갑, 반코팅 장갑,
완전코팅 장갑, 고무장갑, PVC장갑, 랩, 장화, 물장화,
보류, 작업복, 보호 테이프, 각종 테이프, 각종 끈, 수동밴드,
자동밴드, 마대, 마스크 등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2-12
☎ 031) 544-3627 FAX. 031) 544-3637
HP. 011-9070-3627
대표 : 김영재

